

06

제 1 토 론

협동조합 : 지역사회와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 :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 구축을 하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에 중앙 정부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리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가 그 동안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갈등(소위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량실직, 경기의 장기침체, 사회양극화 확산, 빈부격차 및 사회불평등 심화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재벌경제 중심의 수출의존도 경제 정책 기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반면에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의 상대적 지역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지방에서 취업과 고용 문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화, 서구화, 독재체제 하의 권위주의 정권, 국가의 불균형성장 전략, 급속한 산업화 등의 역사적 발전 맥락속에서 지역공동체사회의 지속성과 연대성은 공동체 내·외부(in-community and with community)적 관계 속에서 심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가 학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 지역공동체의 재생(regeneration)과 재창조(recreation) 논의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실천 행동의 가장 대표적 예가 바로 사회적경제의 일상화 운동이고 협동조합 활성화 문제라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들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과연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필요조건들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서구유럽(이탈리아 로냐, 캐나다 퀘벡,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등)의 협동조합 역사와 경험이 과연 한국적 환경에 착근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생산, 소비, 이용, 신용 등의 분야에서 역사적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성과 목적성 실현과는 약간의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생산자 단체의 협동조합 대표격인 농협이 과연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왔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내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져

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치적 민주성과 정치적 활동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등과 같은 결사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주체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동시에 엄격한 검증 절차에 근거하여 선택적 지원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목표(특히 고용증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마을소득 증대 등)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의 양적 증가에 매몰되는 경향을 띠어 왔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들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극복과 지역공동체 회생(regeneration)에는 관심없고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을 받아 자신들의 사업 번창에 일시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지역사회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인프라, 참여자, 조직 및 단체 등)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 실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적 자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으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결사체들의 일시적·산발적 지원에만 머물러 지역의 내생적 발전 모델 구축과 순환경제 기반 조성이 요원하다.

넷째, 사회적경제 운동을 추진해 나갈 개별 참여자(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훈련과 체험이 요구된다. 개별 참여자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가치와 목적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없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거나 일시적 고용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이 뿌리내리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 지식생태계 속에서 체계적 교육과 훈련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 참여자 혹은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은 지역의 역사, 경제구조, 문화적 특성, 공동체 연대수준, 민주적 시민의식 등을 고려 하에서 발굴·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협동조합의 설립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비판적 성찰 없는 모방에서 비롯된다면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사람, 그리고 주변 여건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국내외 투자유치와 중앙 정부의 지원 등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내생적 발전 전략을 중요시 하는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면 외생적 발전 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바탕위해서 만이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